#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9-79호
2019. 12. 13.(금)


| 선 람 | 기관(부서)의 장 |
|---|---|
| | |

##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143호) ·····1

**공 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채용계획 재공고(공고 제2019-1056호) ·····2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1054호) ·····6


| 공 람 | | | | | | | | | |
|---|---|---|---|---|---|---|---|---|---|
|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143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지 번 주 소 | 도 로 명 주 소 | 부여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 비고 |
|---|---|---|---|---|---|
| 오정동 635-25 | 한밭대로1033번길 43 | 2019. 12. 13. | 건물신축 | 한밭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0,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중리동 380-26 | 중리서로41번길 21 | 2019. 12. 13. | 건물신축 | 중리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2019-105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채용계획 재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 부 서 | 직 종 | 인원 | 주요업무내용 | 비고 |
|---|---|---|---|---|
| 총 무 과 | 다급(단순노무) | 1명 | 구내식당 취사, 조리, 배식 등 | 취사인부 |

※ 공무직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함.

## 2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않는자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나.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 분야(직종) | 응시요건 | 비고 |
|---|---|---|
| 다급(단순노무) | - (거주지) **대전광역시**에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br>- (경 력) **단체급식(100인 이상)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취 사<br>인 부 |

## 3 시 험 일 정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 | 최종합격자 발표 |
|---|---|---|---|---|
| | | 일시 | 장소 | |
| 2019. 12. 18.(수)~ 12. 23.(월)<br>09:00~18:00(3일간)<br>*중식시간(12:00~13:00) 제외 | 12. 24.(화) 예정 | 12. 26.(목) 예정 | | 12. 27.(금) 예정 |
| | | 면접시험 일정 발표 시 확정공고 | | |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구정소식-고시공고-채용공고)에 게시

## 4 시 험 방 법

###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

###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전문)성 및 인성 등을 검정

- 직종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간단한 실기(채썰기) 병행

○ 평정요소마다 각각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이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고득점 여부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에 따라 처리함.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나. **접수기간** : 2019. 12. 9.(월) ~ 12. 11.(수) 09:00~18:00 /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2층) 교육단체팀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직접 작성(구비)하여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대리접수 시 위임장 작성 제출(별지 제6호 서식) 위임하는 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지참

##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사.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졸업증명서, 자격증, 상훈, 경력증명서 등 / 해당자)

**【 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제출 시 유의사항 】**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하며,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 모든 서류는 원본(복사본 제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채용분야 경력사항이 기본급 호봉 산정 등에 반영될 수 있음

## 7 근 무 조 건

가. 신　　분 : 공무직

나. 근무시작 : 2020년 1월(예정) / ※근무예정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주 5일 / 주 40시간 (필요에 따라 토·일요일 근무)

※ 근무시간, 근무방법은 부서의 근무명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보수조건 : 대전지역공무직노사 단체·임금협약서에 따름

– 연봉(다급) : 약 2,800만원(1호봉 기준)

## 8 기타 안내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출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결정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1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채용 이후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공무직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042-608-6552)로 문의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105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2.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출석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9. 12. 13. ~ 2020. 1. 2. / 20일

##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

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사회복지과(전화 : 042-608-6774, FAX : 042-608-3833, E-mail : sej282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과 담당자 송은주(전화 : 042-608-67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2019-105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련 업무 담당 직원
3.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

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안건은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팀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를 취합하여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table>
<tr><th>항목</th><th colspan="3">세부 기준(안)</th></tr>
<tr><td rowspan="4">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br><br>※행정처분 관련 감점기준 (최근6년 이내)</td><td></td><td>배점</td><td>채점</td></tr>
<tr><td>□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위반(예결산 미승인 포함), 평가·조사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이 없는 경우<br><br><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br>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br>△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1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br>△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5점<br>△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br>△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br>※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br>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br>△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감점 5점</td><td>25</td><td></td></tr>
<tr><td>□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br>(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br><br><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br>△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br>△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br>△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td><td>20</td><td></td></tr>
<tr><td>□ 재무회계 및 운영관리전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감점 5점</td><td>5</td><td></td></tr>
</table>

| | | 배점 | 채점 |
|---|---|---|---|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점)<br>□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연1회 이상) (5점)<br>□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5점) | 15 | |
| | | 배점 | 채점 |
|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5점)<br>□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5점)<br>□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5점) | 15 | |
| | | 배점 | 채점 |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대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5점)<br>□ 요양인력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제도 운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5점)<br>□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공개채용 등) (5점)<br>□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 등 건강관리 계획 마련 여부 및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제도 등)마련 여부 (5점) | 20 | |
| | | 배점 | 채점 |
| 지자체 심사항목 | □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지정 신청 의결을 함으로써 집단민원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기타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 감점 10점 | 10 | |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u>80점 이상</u> 이어야 함** | | | |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69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

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 12. 11.>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19. 12. 12.] 제3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12.] [보건복지부령 제681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9., 2015. 12. 31., 2019. 10. 24.>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 6. 12.>

〈 의안 소관 부서명 〉

| 사회복지과 | |
|---|---|
| 담 당 자<br>연 락 처 | 송 은 주<br>042-608-6774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